

긴급 입찰 사유서

□ 물품개요

- 물 품 명 : 액화수소저장시스템 기능부품 성능평가시스템
- 납기기간 : 계약 후 516일 이내
- 추정가격 : 6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긴급입찰 사유

- 해당 물품은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지원 기반구축(NM00070102)(‘25 ~ ‘29년)” 의 일환으로 액화수소 저장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능부품(차단밸브, 안전밸브, 레귤레이터 등)의 기밀 성능, 내구 성능(Cycle), 내압 및 파열 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장비임
- 전주기 지원센터 건축 설계 반영에 따른 장비 규격 확정 지연으로 목표 구매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원활한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공급기업 선정 및 도입이 필요한 상황
 - 산업기술개발장비 개정(24년 6월) 이후, 구매 원칙이 조달청 중앙조달에서 공개입찰 허용하도록 개정됨
 - 전담기관 간사님의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권고 및 연구원 내부 분할지급 시스템 불가로 조달청 의뢰로 진행필요
 - 조달청 입찰·평가·계약 등 행정 절차 진행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목표 일정 준수를 위해 긴급 입찰 추진 필요
- 또한, 본 입찰 건의 부품 수급 지연 등 여러 변수가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매 완료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공고 기간 단축이 필요함
- 이에, 당해연도 연구비의 신속한 집행과 사업비 집행 마감시한

('26.12.10 예정)을 고려하여 수행 기간 내의 사업목표 달성 및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긴급입찰을 추진하고자 함

2026년 8월
한국자동차연구원

□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 제1호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별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10. 7. 21., 2021. 7. 6.>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 6. 22.>